



박 소 영

이대서울병원 호흡기내과

## 증례1

- 68세 남자 환자

IPF, Stanford type B aortic dissection,

Pneumonia ARDS, LC -B

Intubation 안하겠다고 했다가, saturation 떨어지면서 의식 저하되자

환자가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마음을 바꿈 -> intubation 도중 arrest

-> 15 분 CPR 후 ROSC-> 의식은 명료하게 돌아옴

BP 90/60 mmHg, 소량의 norepinephrine,

TV 380ml, RR 25 회, plateau pressure 35mmHg FiO2 0.8

ABGA 7.28-78-68-38-89

Urine output 60cc/hr

## 증례1

- 68세 남자 환자

IPF, Stanford type B aortic dissection,  
Pneumonia ARDS, LC -B

Intubation 안하겠다고 했다가, saturation 떨어지면서 의식 저하되자  
환자가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마음을 바꿈 -> intubation 도중 ar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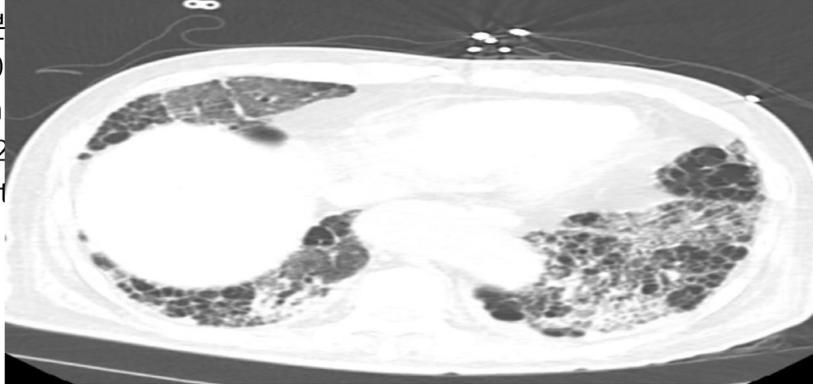
-> 15 분

BP 90/60

TV 38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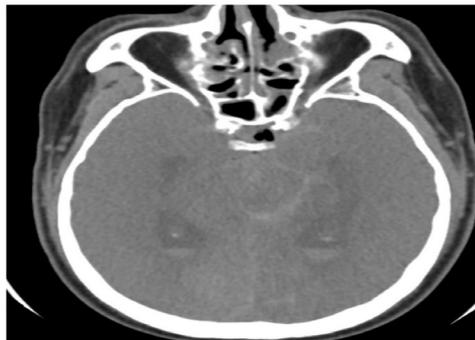
ABGA 7.2

Urine out



## 증례 2

- 72세 남자
- 부정맥
- 새벽 1시까지 함께 술먹음
- 갑자기 소리지른 후 의식 떨어져 의식 저하로 내원



## 연관 용어 정의

- **연명의료(life sustaining treatment/therapy):**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제4호).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법 제2조제5호).

## 연관 용어 정의

- **말기환자**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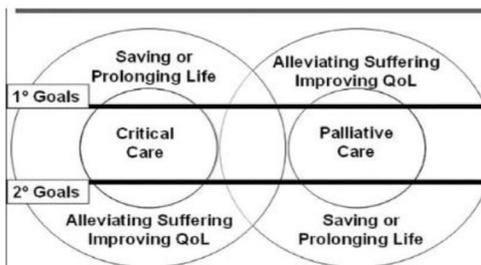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가능성이 낮아 수일에서 수주 사이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거나 임종 임박 징후가 시작된 환자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인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

## 임종기(The last days of life, final days of life)

임종기 진입은 다음 4가지 임상 상황으로 나누어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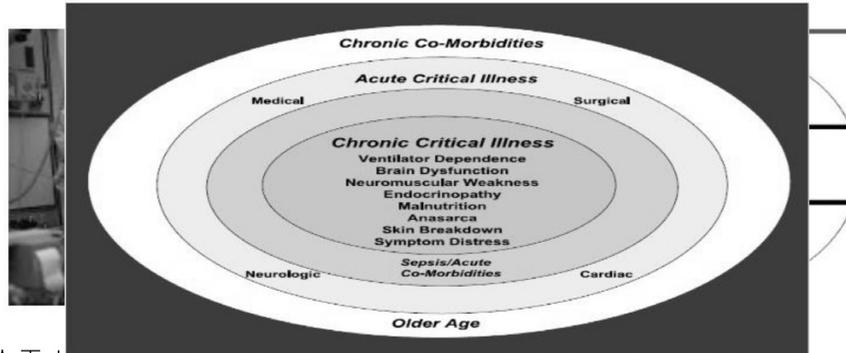
- 1) 급성 질환 환자
- 2) 만성 질환 환자
- 3) 만성 중증질환 환자
- 4)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환자 (ECMO)

## 만성 중증 질환



수주 내의 충분한 중환자실 치료 기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여러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

## 만성 증증 질환



수주 내의 중추인 중환자실 치료 기간이 경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여러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

## 임종관련 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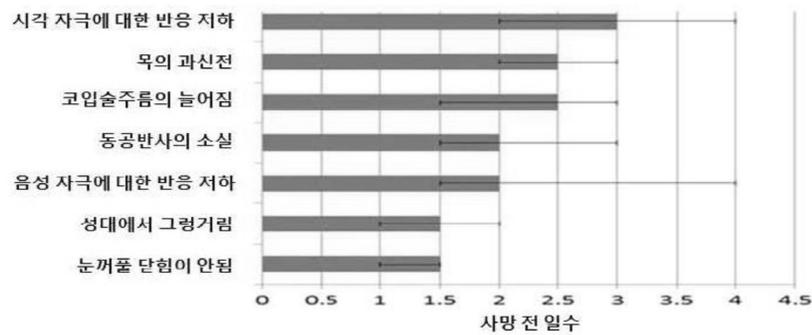


그림 1. 임종 전 발생하는 7가지 신경학적 징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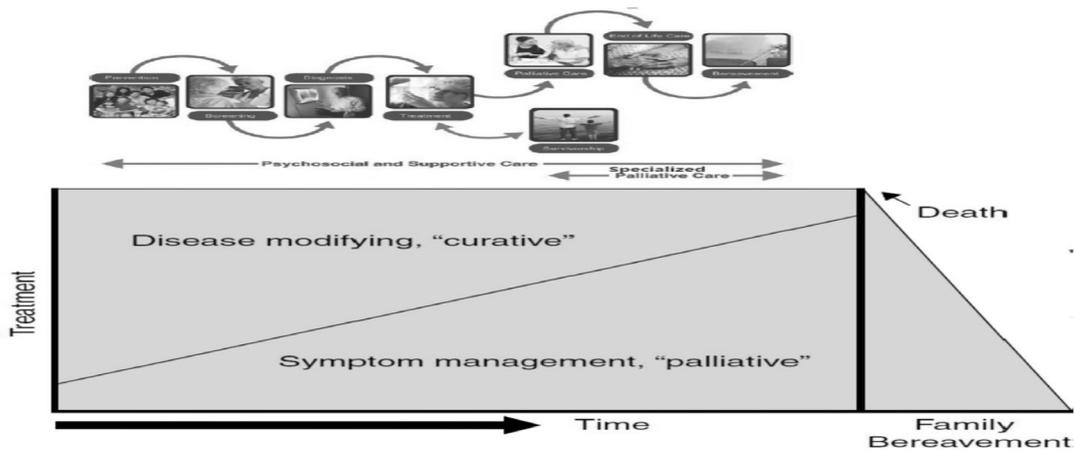
표 1. 건강력 코호트 연구에서 제시된 유의한 임종 관련 징후(impending sign)

신뢰도-	
<b>생체 징후 관련 변수</b>	
혈압 저하(수축기 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10mmHg 이상)	상 124, 127
낮은 수축기 혈압	하 125
분당 맥박 수 증가(안정된 상태보다 20% 또는 10회 이상)	상 124, 127
빠른 분당 맥박 수	하 125
산소 포화도 감소(90% 미만 또는 기본보다 8% 이상 감소)	상 124, 127
호흡수 증가(분당 5회 이상)	중 127
빠른 분당 호흡수	하 125
체온 증가(0.5°C 이상)	중 127
노동맥(radial artery) 맥박의 소실	중 125
소변량 감소(12시간 동안 100ml 미만으로)	중 125
<b>신경계 변수</b>	
의식 수준의 저하	상 124, 125
명료하지 않은 의식 수준	하 122
국위 과신전	중 125
코-인술 주름의 늘어짐	중 125
동공반사의 소실	중 125
상대에서 그렁거림	중 125
누적물 단원이 안 됨	중 125

마지막 수일간의 여명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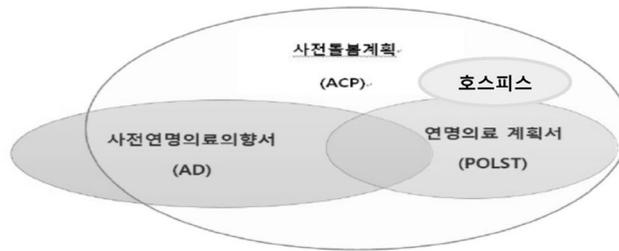
### 사전돌봄계획 (Advance Care Planning, ACP)

- 진료과정 중 환자의 자율성과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료진과 환자 측이 향후 수행될 진료의 목표와 구체적 방식을 자율적으로 상담하는 과정, 질병의 조기에 시작 가능



## 사전돌봄계획 (Advance Care Planning, ACP)

- 질병의 진행상황에 따라 담당의사는 선택이 가능한 진료사항의 장단점에 대한 정보를 환자 측에 제공하여 환자 측의 판단을 돕고 그 내용은 의무기록으로 남김
- 특정 치료를 거부하는 것도 포함된다.



- 사전돌봄계획,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관계 모식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vs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	연명의료계획서(POLST)
작성자	성인(만19세 이상)	담당의사( 환자, 보호자)
작성시점	건강할 때	말기환자 혹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미성년자	작성불가	담당의사가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후 작성 가능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한 환자의사 확인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확인	별도 확인 없이 환자의사로 봄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담당의사+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환자의 의식없음을 확인	별도 확인 없이 환자의사로 봄

Medical Order 로  
바로 사용 가능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대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1. 등록번호: [ ]

2. 환자: 성명 [ ], 생년월일 [ ]

3. [ ]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 등록원 의향서 있음  
 [ ] 등록원 의향서 없음

위 환자에 대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화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 본인에게 확인하였습니다.

4. 담당의사: 성명 [ ], 소속 의료기관 [ ], 연 [ ] 월 [ ] 일  
 면허번호 [ ]

5. [ ]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 등록원 의향서 있음  
 [ ] 등록원 의향서 없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당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하에 조화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6. 담당의사: 성명 [ ], 소속 의료기관 [ ], 연 [ ] 월 [ ] 일  
 면허번호 [ ]

7. 해당 분야의 전문의: 성명 [ ], 전문과목 [ ], 연 [ ] 월 [ ] 일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복합지(80g/㎡) 또는 중량지(80g/㎡))  
 등록자 [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복합지(80g/㎡) 또는 중량지(80g/㎡))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대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등록번호는 등록기관에서 부여합니다.

등록번호: [ ]

작성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호스피스 이용: [ ] 이용 의향이 있음 [ ] 이용 의향이 없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외 설명사항 확인: [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한 사항  
 [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 등록기관의 폐업·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위의 사항을 설명 받고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연 [ ] 월 [ ] 일 성명 [ ] (서명 또는 인)

환자 사망 전 알릴여부 여부: [ ] 알람 가능 [ ] 알람 거부 [ ] 그 밖의 의견 [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및 상담자: 기관 명칭 [ ], 소재지 [ ]  
 상담자 성명 [ ], 전화번호 [ ]  
 상담자 [ ]

본인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작성했으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작성일 [ ] 연 [ ] 월 [ ] 일  
 작성자 [ ] (서명 또는 인)  
 등록일 [ ] 연 [ ] 월 [ ] 일  
 등록자 [ ] (서명 또는 인)

**호스피스: DRG  
 COPD, LC, HIV: 전문형**

**연명의료계획서**

※ 대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1. 등록번호: [ ]

2. 환자: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환자 상태: [ ] 말기환자 [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3. 담당의사: 성명 [ ], 면허번호 [ ]  
 소속 의료기관 [ ]

4. 연명의료 중단결정 (항목별로 선택합니다): [ ] 심폐소생술 [ ] 인공호흡기 작동  
 [ ] 혈액투석 [ ] 항암제 투여

5. 호스피스의 이용 계획: [ ] 이용 의향이 있음 [ ] 이용 의향이 없음

6. 담당의사 설명사항 확인: [ ]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사항  
 [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7. 확인 방법: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연 [ ] 월 [ ] 일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녹화 [ ] 녹취  
 ※ 법정대리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연 [ ] 월 [ ] 일 성명 [ ] (서명 또는 인)

8. 환자 사망 전 알릴여부 여부: [ ] 알람 가능 [ ] 알람 거부 [ ] 그 밖의 의견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9. 담당의사: 연 [ ] 월 [ ] 일  
 210mm×297mm(복합지(80g/㎡) 또는 중량지(80g/㎡))  
 담당의사 [ ] (서명 또는 인)

**연명의료계획서**

※ 대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등록번호: [ ]

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환자 상태: [ ] 말기환자 [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담당의사: 성명 [ ], 면허번호 [ ]  
 소속 의료기관 [ ]

호스피스 이용: [ ] 이용 의향이 있음 [ ] 이용 의향이 없음

7. 담당의사 설명사항 확인: [ ]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사항  
 [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위의 사항을 설명 받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 방법: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연 [ ] 월 [ ] 일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녹화 [ ] 녹취  
 ※ 법정대리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연 [ ] 월 [ ] 일 성명 [ ] (서명 또는 인)

환자 사망 전 알릴여부 여부: [ ] 알람 가능 [ ] 알람 거부 [ ] 그 밖의 의견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연 [ ] 월 [ ] 일  
 담당의사 [ ] (서명 또는 인)

1. 구 서식으로 작성하셨던 분들이 단지 항목추가의 이유로 새로운 서식으로 반드시 재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 서식으로 사전연명의료의합서를 작성하신 분이 항목추가에 따라 재작성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의사확인서(10호) 대신 연명의료계획서(1호)를 새로 작성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구서식으로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12호, 12호를 쓰신 환자본인이나 환자가족들이 항목 추가의 이유로 재작성하기를 원하는 경우 재작성 하셔도 무방합니다.

2. 홑서식으로 1호, 6호, 11호, 12호를 작성하신 경우라도, 9월 28일 이후 이행서를 작성하신다면 新서식의 이행서에 이행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미 홑서식으로 이행서까지 작성해놓은 경우라면, 새로운 서식으로 1호 또는 11호, 12호를 재작성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행서를 재작성하지는 않고, 의무기록 등으로 추가된 이행항목을 기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추후 전산개편 등을 통해 추가이행관련 재등록이 가능할지 여부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변경이 생기는 경우 즉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말기와 임종기’의 정의

대상환자	임종기 (법 제 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6호)	말기환자 (법 제2조제3호)
------	-------------------------------	--------------------

**제16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8. 3. 27.>

[시행일 : 2019.3.28.] 제16조제2항

상태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근원적인 회복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	---	---

- 담당의사: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 및 임종과정 환자 등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법 제2조제7호).

## 말기판단

- 암/에이즈/ 간경화/만성폐쇄성폐질환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 암/에이즈/ 간경화/만성폐쇄성폐질환

-> 삭제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2019년 3월 28일

-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추가함

### < 연명의료 시술 대상 >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폐소생술</li> <li>· 혈액투석</li> <li>· 항암제 투여</li> <li>· 인공호흡기 착용</li> </ul> <p><u>&lt;신 설&gt;</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폐소생술</li> <li>· 혈액투석</li> <li>· 항암제 투여</li> <li>· 인공호흡기 착용</li> <li>· 체외생명유지술 (ECMO)</li> <li>수혈</li> <li>혈압상승제 투여</li> <li>그 밖의 연명의료</li> </ul>

연명의료계획서 개편안, 2019년 2월 22일		서 치료효과
• 연명의료 없이 임  • 심 • 함 • 항 • 인 <신>	<b>체외생명유지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기술. 체외순환장치(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사용하여 인공순환을 유지하며, 정맥혈을 뽑아 체외에서 산소를 보충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다음 정맥 또는 동맥 내로 주입하는 방법임</li> <li>• 출혈(도관 삽입부 출혈, 위궤양출혈, 뇌출혈), 응고장애, 도관을 삽입한 하지의 허혈, 공기색전증, 혈전색전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b>수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혈은 정맥에 정맥관(IV)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기술로서,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필요할 수 있는 치료 방법</li> <li>• 미열이나 피부발진과 같은 경미한 반응 또는 체액 과부하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이 밖에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혈액의 수혈, 알레르기나 급성 폐 손상 등의 심각한 반응,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li> </ul>	
	<b>혈압상승제 투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혈관 수축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서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제를 투여하는 것임. 지속하여 사용 시 사지괴저 등의 합병증을 유발 함</li> </ul>	
	<b>그 밖의 연명의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기술 : 해당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담당의사가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다양한 의학적 기술을 포괄함</li> </ul>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 확대

-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안 제2조제3호)하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말기환자+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 소정의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이 되는 '호스피스대상환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6호).

질병 종류	초기 및 진행기	말기	임종기
암,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기타 질환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 간소화

-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현행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함께 판단
개정안	(원칙)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호스피스전문기관) 담당의사 1명 판단 가능 허용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문서 기록에 전자문서 작성,보관 가능

##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대한 처벌이 완화

-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환자의 의사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되었으며 개정 즉시 시행

## 가족 전원의 동의 -> 축소

- (기존)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
- (개정) ①.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

#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시행령 제10조제1항 제1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 최소화

#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25조)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서류는 다양한 현실을 고려, 증빙서류의 범위를 넓힘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하려는 담당의사는

① 이행 대상 환자인지 판단하고 ②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해당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③ 이행하여야 함

① 이행 대상 환자 판단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은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②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는 담당의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함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의사와, 보호자, 환자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POLST) 가 있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AD) 와 의사2인의 확인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

환자가 평소에 연명의료를 원치 않았다는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사 2인의 확인  
사전의료의향서 (AD) 와 의사 2인의 확인 :환자의 충분한 의사 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법 12조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있다는 사실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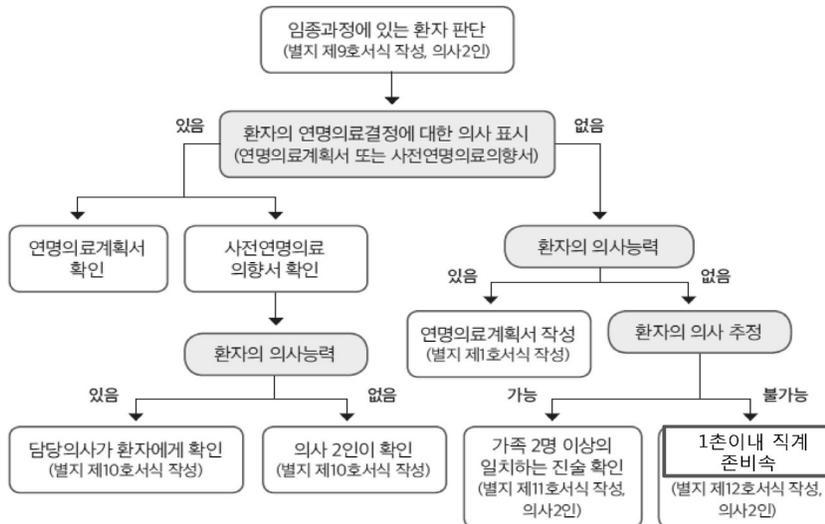
가. 배우자

나. 1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절차**



## 연명의료 중단 흐름도

- 환자에게 연명의료 시행 중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모르는 경우)

보호자가 연명의료 중단 요구하거나 의사가 중단 제안

합의된 경우

가족 합의+  
의사 2인 확인

연명의료중단

미합의

가족끼리 의사와 가족간  
이견

병원 윤리위원회 회부해  
논의

논의 결과 권고

이행하는 경우에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됨  
담당의사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함. 다만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 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증례 1

67세 남자환자

COPD, HCC, unstable angina

MDR A. Baumannii 에 의한 Pneumonia, ARDS 진행

High dose norepinephrine 혈압저하 진행.

보호자(남동생, 아들) 더 이상 치료하고 싶지 않다.

# 증례 1

67세 남자환자

RA-ILD, HCC, unstable angina

MDR A. Baumannii 에 의한 Pneumonia, ARDS 진행

High dose norepinephrine 투여에도 혈압저하 진행.  
Respiratory acidosis 진행

## 말기 < 임종기

담담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임종기 동의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지 제9호서시] <개정 2018. 2.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 핵심이 어두운 부분은 적상하지 않습니다. \*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환자	성명	신상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담의사	소속 의료기관	소속 의료기관	소속 의료기관
전문의를	판단 내용	판단 일시	판단 일시

판단 내용: RA-ILD, pneumonia, sepsis 상태로 3-4인 경우의 산소 및 인공호흡기 치료도 회복되지 않는 양상 보이며 급박기저 질환을 고려하여 수습 치료는 의의적으로 선택됩니다.

2018년 3월 27일 박소영

담담의사: 박소영

발급확인번호 : 3830-1444-0702-2960

**주민등록표 (등본)**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내용과 동일성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 배지희  
신청인 : 오세욱  
출생일 : 2018. 03. 28  
2018년 03월 28일

대전광역시 서구월송동

세대주 성명(한자)	오두*	(외국인)	세대 구성	세대 구성
번호	주	소	전	변
현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119, 2동 11		연	년
			월	일
			10	31

번호

번호	세대주와의 성명(한자)	성명	연	변	년	월	일	사	유
1	본인	오두희	50061	/	외국인				거주자
2	자녀	오세	80021						거주자
3	자녀	오세	82010						거주자

2018년 3월 27일

담담의사: 박소영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2. 2.>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 대상인 아무런 부분도 작성하지 않음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음력연월일은 주로가공에서 부여합니다.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심폐소생술 <input type="checkbox"/> 인공호흡기 사용	
(양복별로 선택합니다.)	<input type="checkbox"/> 혈액투석 <input type="checkbox"/> 항암제 투여	
환자가족	성명	신술 내용
	성명	신술 내용
진술 내용	2018년 3월 27일 오전 10시 30분 환자가족 2명(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입원하여 중환자실 2018-03-27-001에 입원하였습니다.	

위 환자의 환자가족으로서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는 충분한 기간 동안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일관하여 표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합니다.

연일	환자가족 성명	환자가족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명인
1	김소영	딸	1234567890	010-1234-5678	(서명 또는 인)
2	김철수	아들	9876543210	010-9876-5432	(서명 또는 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자가족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3월 27일

담당의사    성명    소속 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해당 분야의 전문의    성명    [기관]    (서명 또는 인)

신분과제(초상) / 기타    전문의 사제 인정번호 3-2-0111    (서명 또는 인)

유위사상

1.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는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한 환자의사에 대하여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 해당 1명의 진술을 말합니다)을 하여야 합니다.
3.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1)재우자, 2)직계비속, 3)직계존속, 4)동생자(1)~(3)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말합니다.
4. 환자가족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5. 담당의사의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비공식(80%) \*] 또는 증명서(80%)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 2. 2.>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심폐소생술 <input type="checkbox"/> 인공호흡기 사용	
(양복별로 선택합니다.)	<input type="checkbox"/> 혈액투석 <input type="checkbox"/> 항암제 투여	
이행 담당의사	소속 의료기관	연락처
	충남대학교병원	010-1234-5678
이행 의료기관	소속 의료기관	연락처
	충남대학교병원	010-9876-5432
이행 일시	2018년 3월 27일 10시 30분	
이행 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심폐소생술 <input type="checkbox"/> 인공호흡기 사용 <input type="checkbox"/> 혈액투석 <input type="checkbox"/> 항암제 투여	
환자 의사의 확인방법	<input type="checkbox"/> 별지 제1호서식의 연명의료결정서(법 제17조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별지 제10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input type="checkbox"/> 별지 제11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input type="checkbox"/> 별지 제12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법 제18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합니다.

2018년 3월 27일

담당의사

## 증례 2

### • 68세 남자 환자

IPF, Stanford type B aortic dissection,  
Pneumonia ARDS, LC -B

Intubation 안하겠다고 했다가, saturation 떨어지면서 의식 저하되자  
환자가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마음을 바꿈 -> intubation 도중 arrest  
-> 15 분 CPR 후 ROSC-> 의식은 명료하게 돌아옴

BP 90/60 mmHg, 소량의 norepinephrine,  
TV 380ml, RR 25 회, plateau pressure 35mmHg FiO2 0.8  
ABGA 7.28-78-68-38-89  
Urine output 60cc/hr

-> 환자가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시 CPR 까지 해달라

### .증례 3

76세 남자 환자 DM ESRD, parkinsonism 으로 요양원에서 10년 생활 pneumonia 로 intubation 후 전원, 보호자 투석 포함한 모든 치료 거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록기준지: \_\_\_\_\_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_____	_____	_____	남	慶州

가족사항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_____	_____	_____	남	_____
모	_____	_____	_____	여	密陽
배우자	_____	_____	_____	여	慶州
자녀	_____	_____	_____	남	慶州
자녀	_____	_____	_____	남	慶州
자녀	_____	_____	_____	남	慶州
자녀	_____	_____	_____	남	慶州

위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사항과 불일치함을 증명합니다.

2018년 03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차양 박수남**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의 「다른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 연명의료중단 합의서

배우자 : \_\_\_\_\_  
자녀 : \_\_\_\_\_

상기 가족 전원은 \_\_\_\_\_의 치료를 중단함에 합의하고 동의합니다.

2018년 3월 28일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견서**

환자: \_\_\_\_\_ 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연명의료 중단 결정 (항목별 표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환자가 이성년자인 경우  
 위 환자의 입양대리인(친권자)으로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사를 표시합니다.

연번	친권자 성명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명
1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환자가족 전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위 환자의 환자가족으로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하여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와 위와 같이 의사를 표시합니다.

연번	환자가족 성명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명
1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4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5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기록합니다.

**적극적 치료 원하지 않아 요양병원으로 전원 시에도 임종과정 판단서, 이행서 지참 필요**

2018년 3월 30일

담당의사: \_\_\_\_\_

#### 증례 4.

- 69세 COPD (FEV1 0.3)

- 집에서만 생활

호흡곤란으로 의식 잃고 내원.

이전에 intubation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으나(보호자),

응급실 ABGA 6.9-102-53-34-85-> intubation 후 중환자실 입실

아들: 왜 intubation 했는가? 어머니가 몰라서 해버린 것  
당장 빼달라

의사: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설득  
사회사업과 의뢰: 경제적 지원

5일 후 발관 직후 – 환자 alert

환자에게 의사 타진

다음에 이번처럼 숨차고 의식이 없어지면 또 인공삽관 하실거예요?

환자: 당연히 할래요. 오후라도 힘들어지면 하겠어요

3일 후

병동이실 직전 다시 의견 물어봄

다음에 이번처럼 숨차고 의식이 없어지면 또 인공삽관 하실거예요?

환자: 아니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호자:

아내: 아들이 저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랬어요

아들: 병동 이실까지 찾아오지 않음

5일 후 발관 직후 - 환자 alert

환자에게 의사 타진

다음에 이번처럼 숨차고 의식이 없어지면 또 인공삽관 하실거예요?

환자: 당연히 할래요. 오후라도 힘들어지면 하겠어요

3일 후

병동이실 직전

호흡곤란이 심해지면 환자의 생각 변화  
환자와 아내, 아들의 생각의 일치를 확인할 수 없으  
요?

환자: 아니요.

보호자:

아내: 아들이 저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랬어요

아들: 병동 이실까지 찾아오지 않음

## 증례 5

69/F

Pneumonia ARDS 호전 중

“대만 국적”

한국에 산 지 15년

보호자 임종기 아닌데도 치료 중단 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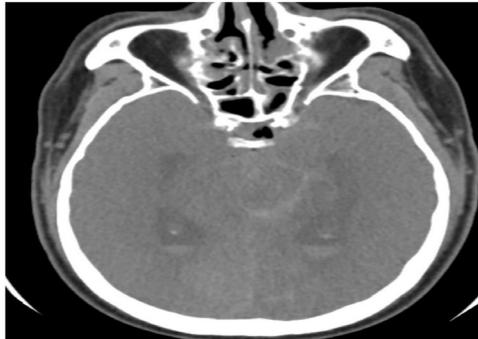
;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없다.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을 수 있는 작은 병  
원으로 옮겨 달라. 미국은 1인실 중환자실인데 한국은 왜 그런가? 죽어  
가는 사람을 이렇게 둘 수 없다. 원래 대만 문화는 그렇지 않다. 가족이  
원하는 걸 왜 해주지 않는가?

국적/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

-> 요양병원에서 받지 못하겠다고 함 -> 돈이 없어요..-> 사회 사업팀

## 증례 6

- 72세 남자
- 매우 건강하게 지냄
- 새벽 1시까지 가족들이 함께 술먹음
- 다음날 아침 갑자기 의식 떨어진 채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내원



## 신경외과 영역에서의 문제

- large volume of ICH, poor grade SAH, hemorrhage from high grade AVM (diffuse type) -> malignant cerebral edema, brainstem dysfunction-> acute onset  
-> 평소에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 환자의 가족들이 의사결정하기에 시간이 촉박하거나, 환자 상태 변화가 예측불가한 경우에는 연명치료결정이 주치의로서는 힘들다.
- Herniation, malignant infarction (MCA territory 2/3 이상), whole brain ischemia (black brain on CT)= death?  
malignant MCA infarction의 경우에 functional outcome은 매우 좋지 않으나 (특히 Lt side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면 사망률은 다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술 후 환자의 의미있는 삶에 대한 가족들의 충분한 동의가 있어야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기도 함-> 가족과 의사의 충분한 discussion 요구됨.

## 임종기 돌봄

# 연명의료중단 및 임종기 돌봄 권고안

Korean Professional Consensus for Comfort Care and  
Withdrawing/Withholding in the Intensive Care Unit; by the Task  
Force of Korean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Korean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KSC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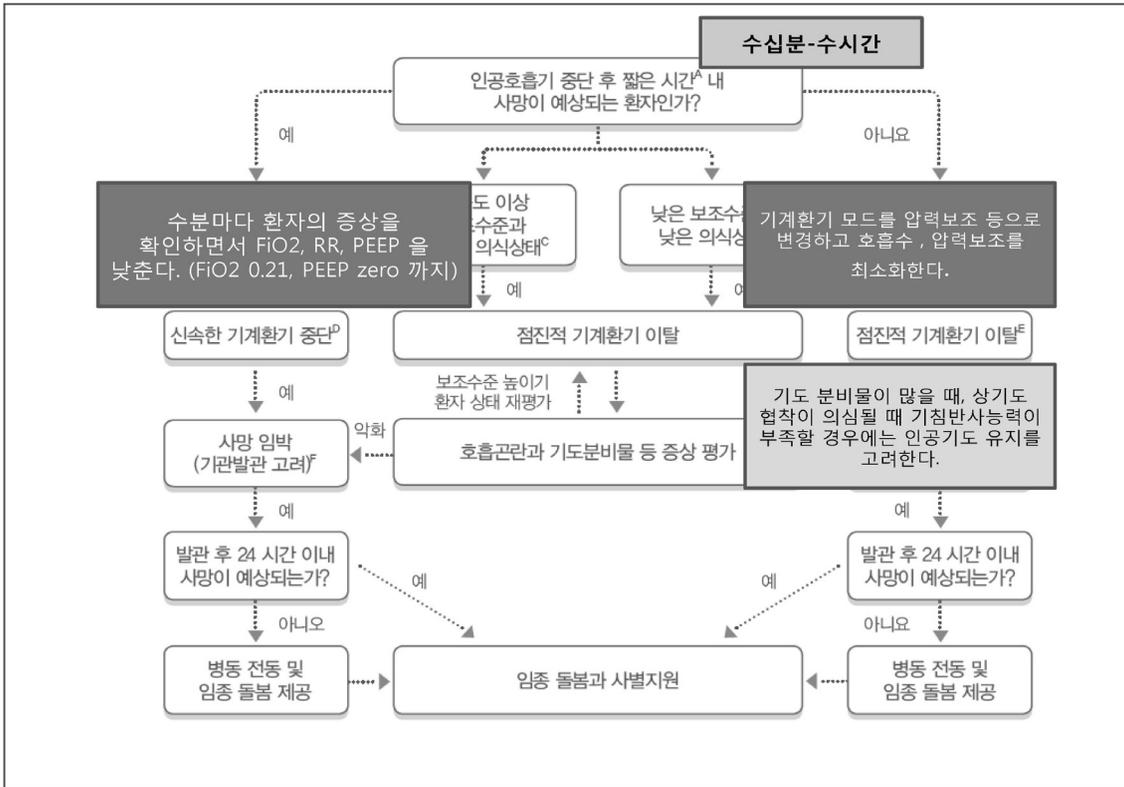
대한중환자의학회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위한 준비

- 담당의사는
-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실한 이후 조기에, 정기적으로 가족면담을 하여 환자와 가족의 선호와 가치를 확인한다.
- 의학적, 경험적, 윤리적 판단에 입각하여 급성 또는 만성 중증환자가 수 일 내지 수 주 내에 사망이 예상될 때, 환자 및 환자 가족과 임종 돌봄을 포함한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 중환자실 치료를 의뢰 받은 입실 전의 환자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다.
- 급성 중증 뇌손상 환자/ 중증 신경퇴행성질환/ 만성중증질환 환자 가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거나, 신경학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때, 환자 가족과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 연명의료와 생명장치의 중단

- 기계환기(mechanical ventilator)
- 기계환기(mechanical ventilator)를 이탈 또는 중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환자의 의학적 상태, 인공호흡기의 보조 수준, 환자의 의식수준에 맞춰 개별화 한다.
- 의료기관은 필요한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의료진을 지원한다



## 신대체요법

- 임종과정 환자에게 지속적 또는 간헐적 신대체요법은 가능하면 중단한다.
- 과도한 체내 수분이 문제가 되면 신대체요법을 중단하기 전에 최대한 체내 수분을 제거 한다.
- 투석 카테터가 통증이나 불편을 유발하면 제거한다.
- 임종과정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신대체요법을 주장할 경우, 담당 의사는 신대체 요법으로 환자에게 명백한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종하는 순간까지 신대체요법을 지속하는 것은 일반적인 임종 돌봄의 범주가 아님을 설명한다.

## 세동제거기 및 박동조율기

- 체내삽입 세동제거기(Implantable Cardiac Defibrillator, ICD)  
자기장 장치를 피부에 부착하여 세동제거기를 비활성화 할 수 있다.
- 박동조율기(Pacemaker)를 삽입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임시형 박동조율기는 전원을 끈다.  
임종과정이 Pacemaker 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중단한다.
- 의료기관은 비상 연락망을 포함한 중단 방법에 관한 프로토콜을 마련해두도록 한다.

## 기타 의료기구제거

- 환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임종을 방해하는 의료 기구는 제거  
 비위관: 위장관 감압이 필요함 상황이 아니면 제거  
 동맥 라인 카테터는 제거  
 배뇨카테터는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으면 유지  
 흉관은 배액이 목적이면 유지하되 통증은 조절  
 승압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생명유지 장치와 승압제 등의 중단순서를 정한다.  
 수액과 영양공급: 가급적 인공호흡기 중단 12-24시간 전부터는 수액과 영양 공급의 양을 제한한다.
- 환자에게 이득이 없고 침습적인 검사는 중단

## Q & A

Q1.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모든 사망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 등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환자가 아닌 경우라면 의료법, 응급의료법 등 관련법에 의한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시면 됩니다.

Q2.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을 할 수 있나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때 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와 업무수행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용윤리위원회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 이를 등록한 경우에도 기관 내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Q3.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 가족이 환자에게 환자의 질병이나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고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나요?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파악하고, 임종과정이 예측되는 시점에 미리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하게 하여 환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족이 대신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서는 안되며, 담당의사도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사의 확인 없이 무조건적으로 가족의 의사결정을 수용하여서는 안됩니다.

Q4-1. 담당의사인 전공의가 야간당직 중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문의가 연락을 받지 않는데, 가족은 옆에서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확인된 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그러나 아직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 등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라면, 담당의사는 가족의 요청이 아닌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필요한 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즉, 응급상황의 발생이 예측 가능한 환자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으며, 심정지로 인한 임종의 가능성이 미리 예측되었다면, 해당 환자 및 환자가족과 미리 의논하여 사전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Q4-2. 응급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더 이상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판단 하에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으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연명의료결정법' 제39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인지 여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이 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님
- - 다만,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Q5. 환자 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나요?

-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환자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유보를 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Q6. 환자가족 일부가 해외에 있거나 몸이 불편하여 나머지 환자가족과 한 공간에 모일 수 없는 경우에도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 가능한가요?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서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합의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자가족의 범위 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합의가 확인된다면, 모든 구성원이 한 날 한 시에 한 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으며, 녹음 또는 녹취 등에 의한 확인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Q7.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DNR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금지)은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문서이기는 하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여 오던 임의 서식이며, 작성주체 및 작성방법 등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 또한 DNR은 '임종과정'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전제하기보다 '심정지'라는 특수 상황에 대하여 활용되는 서식입니다.
- 특히 환자의 의사능력에 대한 확인 없이 가족 또는 불특정 대리인에 의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을 결정하는 경우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대리결정을 허용하지 않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연명의료결정법과 관계없이 응급상황 등 의료기관 판단 하에 DNR 사용의 가능성은 있겠으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결정은 아닙니다.